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무선방식 소방용품 품목(시각경보기, 경종)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기능시험 기술기준을 개선 · 보완 하고자 함.

◇ 주요내용

- 가. 무선식 경종, 시각경보장치의 추가도입에 따른 개정 (안 제3조제19의2호 · 제20호, 제3조의2, 제16조제20호 · 제21호)
- 나. 감시전류 설계범위 확인 및 제품표기 (안 제3조제21호, 제16조제22호)
- 다.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(안 제4조)